의안번호	제3093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
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6. 4. 24.

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3093호

제출연월일: 2026. 4. 24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을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의 위탁기간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위탁기간 삭제(안 제1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 및 제4조

2)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
3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해당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8695(2026. 2. 24.)호]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463호

가) 예고기간: 2026. 3. 3.～2026. 3. 23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・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,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수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은 그 계약에서 정한 기간 및 조건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례)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(재계약을 포함한다)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위탁계약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,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13조(위탁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붙임 **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영유아보육법

제3조(보육 이념)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.

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,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.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

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14조(계약 체결)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4. 수탁기관의 의무
5. 계약 위반 시의 책임
6. 예산 및 운영 지원 내용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